



##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5년 11 · 12월호

###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 I. 리스
- II. 보험계약

#### Global 동향

- I. 2015년 9월, 10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 II. 2015년 9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 IFRS 실무적용 해설

실무적용이슈 No.47 펀드운용사의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 판단



##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서(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석서 초안] IAS 12에 대한 해석서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

2015년 10월 해석위원회는 IAS 12에 대한 해석서인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를 제정하기 위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을 발표하였으며, 해석서를 제정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배경

기업이 세무당국과 법인세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그 금액을 납부한 뒤 즉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석위원회는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현행 IAS 12의 문단12~14에서 법인세 자산의 인식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업의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불확실한 상황, 즉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회계처리가 다양하므로 해석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해석서 초안] IAS 12에 대한 해석서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

### 주요내용

법인세 처리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분쟁이 있으나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IAS 12의 문단 14에 따라 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때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IAS 3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우발자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 접근방법, 과세당국의 조사, 과세소득 등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회계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 적용범위

IAS 12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해석서 초안에 따라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이하 ‘과세소득 등’)을 결정해야 한다.

- 법인세 처리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서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세무상 처리를 의미하며, 과세당국이 특정 법인세 처리를 세법에 따라 인정할지 불확실한 경우에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해석서 초안의 적용범위를 과세당국과 분쟁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 접근방법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의 상황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접근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집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업이 법인세 처리를 준비하는 방식을 더 잘 반영하거나, 과세당국이 집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집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과세당국의 조사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지 여부와 고려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과세당국이 신고된 법인세 금액을 조사할 것이며 조사를 위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 과세소득 등의 결정

과세소득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해야 한다.

-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법인세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소득 등을 결정한다.
-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다음 중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의 영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된 불확실성의 효과를 관련된 과세소득 등을 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 가능한 모든 결과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 가능한 결과가 둘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될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

- 기대값 : 가능한 금액과 그 확률을 가중 평균한 금액. 가능한 결과가 넓게 분산되어 있을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

### 사실과 상황의 변화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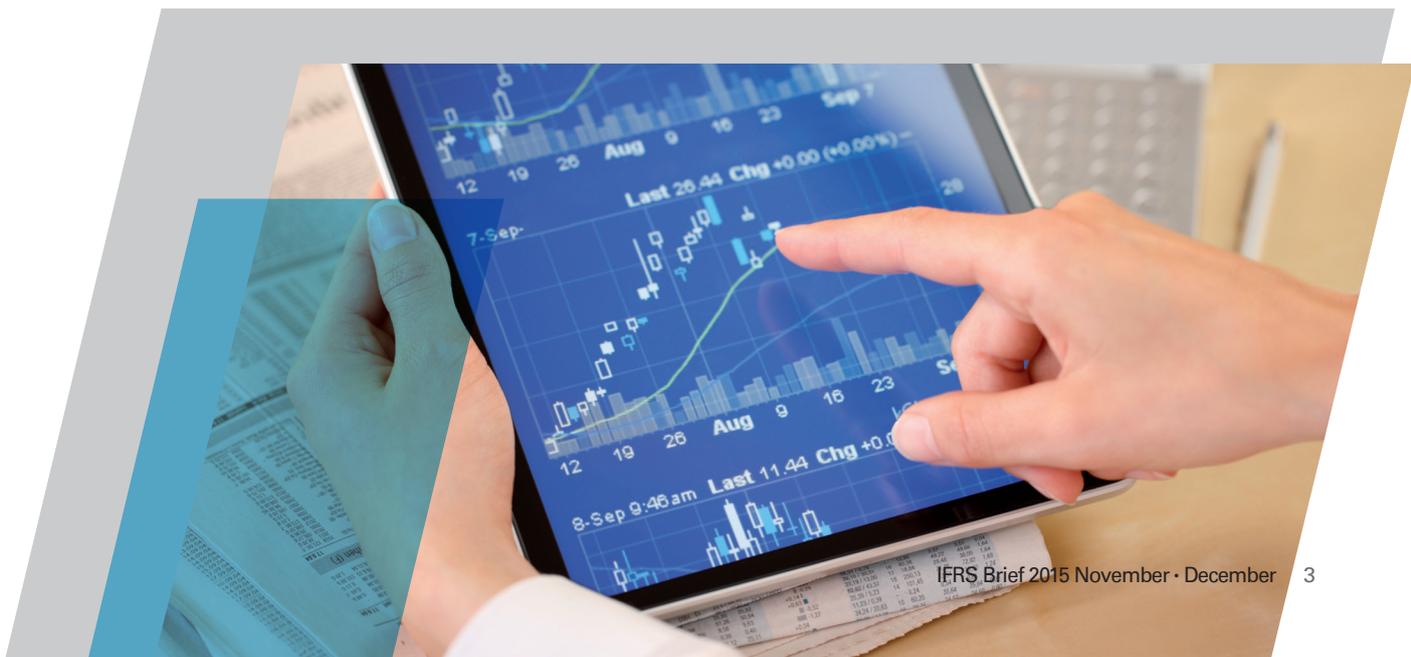
사실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판단, 불확실성 효과 추정금액이 변동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소득 등을 결정해야 한다.

### 공시 및 적용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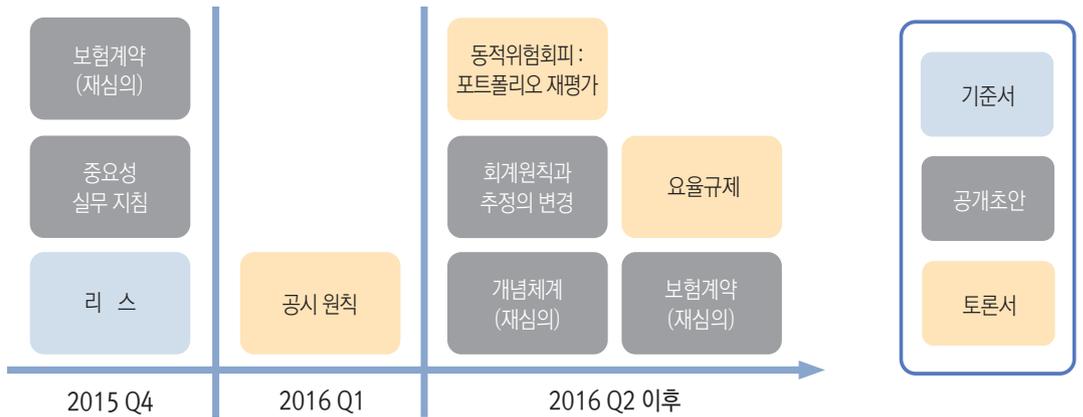
IAS 1 문단 122, 문단 125~129에 따라 과세소득 등을 결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판단을 공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석서 초안의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기적용할 수 있다. 최초 적용 시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비교표시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해석서를 최초 적용할 때의 누적효과를 해석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자본항목에 반영한다.
- 사후판단 없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IAS 8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해석위원회는 2016년 1월 19일까지 이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와 기타 기준서 개정작업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프로젝트 중 IASB의 9,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리스

IASB는 새 리스기준서의 검토를 마무리하였고, 주요이슈와 시행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모든 IASB위원들은 관련 결정에 동의하였다.

### 주요이슈에 대한 잠정적 결정

- 리스이용자(금융리스의 리스제공자 포함)는 기초자산의 사용을 연장하는 리스계약변경을 별도의 새로운 리스 계약이 아닌 기존 리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변동이자율 조건 리스에서 이자율의 변화로 리스 지급액이 변경될 때, 리스이용자는 할인율을 같이 업데이트 해야 함
- 리스이용자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리스와 관련된 복구 의무를 회계처리 해야 함
- 피취득자가 단기 리스와 저가 자산의 리스인 리스이용자인 경우, IFRS 3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IFRS 5의 범위에 포함되는 리스의 공시 규정

IASB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해 해당 기준서가 요구하는 사항 외의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시행일

IASB는 잠정적으로 다음을 결정하였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새 리스기준서를 적용
-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한다면 조기적용을 허용

### 리스의 정의

IASB는 기준서보다는 재무상태표의 평가에 대해 많은 논의와 outreach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리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 향후 계획

이번 회의로 새 리스기준서의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staff은 새 기준서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IASB는 새 기준서를 2015년 12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II. 보험계약

2004년에 보험계약을 다룬 2단계 기준서로 가기 위한 과정의 1단계 기준서인 현행 IFRS 4를 발표하였고 현재 후속 논의로 2단계 기준서를 발표하기 위한 재심의를 계속되고 있다. 2013년에 공개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재심의 과정에서 non-participating contract에 대한 모형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participating contracts의 변경이 초점이 되고 있다.

9월, 10월 IASB는 새 보험계약 기준서의 적용 및 검토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 IFRS 9의 적용시기 이연 허용

당초에 새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시기를 IFRS 9의 시행시기 (2018년 1월 1일)와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나, 보험계약 기준서의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일 일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IFRS 4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IFRS 9 적용시기를 이연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FRS 9 이연 가능 기업

- IFRS 9을 이미 적용하는 기업은 IFRS 9 적용을 이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IAS 39로 회귀할 수 없다.
- 보험활동이 predominant한 기업이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기업의 총부채에서 보험계약의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판단한다.
- 보험활동이 predominant하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IFRS 9을 적용하는 최초적용일이며, IFRS 9 적용을 이연한 기간 중에도 보험활동이 predominant한 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IFRS 9의 적용 이연은 2021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overlay approach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Overlay approach는 기업들이 IFRS 9에 따라 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로 새롭게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영향을 당기손익에서 제거하기 위해 당기손익과 OCI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FRS 4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시장변수의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 측정치의 변동액 표시

배당요소는 기업이 보험사건의 발생에 따른 손실에 비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적인 지급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추가적인 지급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변수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시장변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흐름 추정의 변동을 할인율의 변동과 일관되게 포괄손익계산서의 동일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금융자산의 측정과 분류에 대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경과규정

IASB는 기업이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 되는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사업모형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사업모형의 평가는 IFRS 4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기업이 지정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범위에 속하는 금융자산에만 적용된다.
- 기업이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사업모형을 새롭게 평가하거나 지분상품에 대해 FVO(Fair Value Option) 혹은 FVOCI(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였다면 이러한 기업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의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기업은 경과규정의 완화된 규정에 따른 분류를 소급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경과규정의 완화된 규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의 변동으로 인한 누적적인 영향은 개시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혹은 OCI로 인식되어야 한다.



## I. 2015년 9월, 10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5년 9월, 10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IASB와 FASB 공동 회의

#### 공시, 보험계약, 개념체계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공시개선, 보험계약, 개념체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

#### 사업결합, 영업권과 손상평가

IASB는 사업결합 기준서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FASB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FASB는 사업의 정의의 적용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곧 공개초안을 발행할 계획이며, IASB도 사업의 정의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부내용은 “3. 사업의 정의” 참조)

FASB는 사업결합에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영업권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IASB는 손상검사, 후속적인 영업권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과 관련된 세 가지 항목의 Topic을 진행 중이다. IASB와 FASB의 staff은 프로젝트의 시기, 프로젝트의 중복되는 부분 및 프로젝트 요약내용을 논의하였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 IASB와 FASB는 향후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 2. IAS 23 차입원가 – 건설이 완료된 자산의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관련 특정차입금을 다른 적격자산의 자본화 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 차입금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IASB는 이러한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고 IAS 23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했다. 다음 연차개선(2015-2017)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전진적용하기로 하였다.

### 3. 사업의 정의

IASB는 FASB가 진행 중인 ‘사업의 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IFRS 3 사업결합에도 동일한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사업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취득한 활동의 집합과 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투입과정부터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여하는 실질적인 과정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시장참여자가 없어진 요소를 대체할 수 있고 산출물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집합은 사업에 해당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거한다.
-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모든 공정가치가 대체로 단 하나의 인식 가능한 자산 또는 유사한 인식 가능한 자산의 그룹에 집중된다면, 그 집합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산출물의 정의를 개정한다.
- 사업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한 사례를 추가한다.
- IFRS 3의 제안된 개정사항은 전진적용 될 것이다.

#### 4. 개념체계

개념체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고 그 마감일은 2015년 11월 25일이다.

5월에 개념체계에 대한 공개초안이 발표된 이후 IASB는 전세계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수렴 기간을 2달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하였다.

- 개념체계 공개초안은 향후 기준제정의 결과와 IASB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비록 개념체계 공개초안이 이전에 토론되었지만, 그 토론 내용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 몇몇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제안된 지침(예 : 측정기준의 선택)이 원활한 적용에 불충분하여,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 개념체계 공개초안은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번역 및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5. 현금흐름표

IASB는 IAS 7 '현금흐름표'의 개정관련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의 feedback에 대한 staff의 분석을 9월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공개초안은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차이조정과 유동성에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공시의 요구 및 IFRS의 Taxonomy의 변경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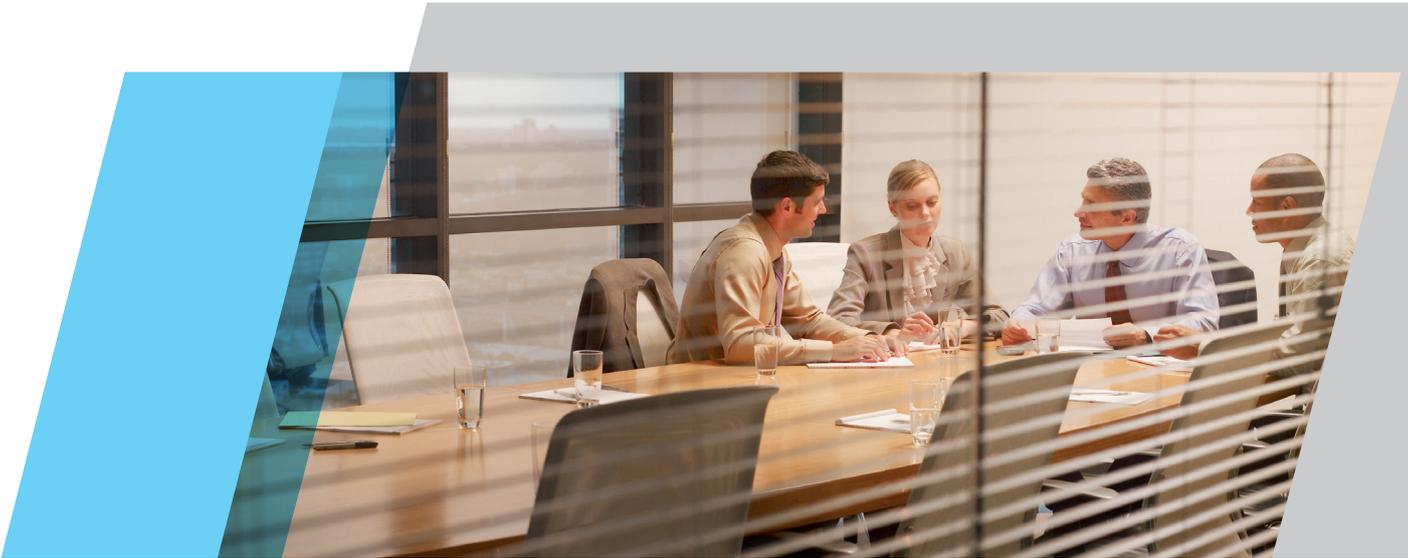
IASB는 다음과 같이 공개초안에 제시된 IAS 7의 수정사항을 확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공시요구사항의 목적을 기준서에 포함시킴
- 기업에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그 정도 및 공시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기준서에 명확히 함
- 기준서에 추가적인 적용사례를 제공할 것

또한 IFRS Taxonomy의 변경에 대해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하였다.

- 차이조정관련 IAS 7의 수정을 위하여 IFRS Taxonomy의 일반적인 실무사항들은 포함하지 않음
- 포함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IFRS Taxonomy의 일반적인 실무사항에 대한 연구 및 outreach는 계속하여 수행할 것임

그러나 10월 회의에서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차이조정을 위한 IAS 7 개정사항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공시사항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IASB는 향후 수령할 feedback을 고려하여 추후 회의에서 유동성공시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II. 2015년 9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5년 9월의 IFRS IC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IFRS 11 공동약정 : 다양한 거래에서 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이슈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참여자가 추가 지분을 획득함에 따라 공동영업의 당사자(공동지배력을 취득)가 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2015년 5월 회의에서 유사한 다른 거래를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2015년 7월에 다음 거래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거래 1) 공동영업의 참여자나 당사자가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
- (거래 2) 지배력을 상실하여 공동영업의 참여자나 당사자가 되는 거래
- (거래 3) 공동영업의 참여자가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

Staff은 기존 보유지분에 대해 회계처리 및 현행 기준을 분석하여 기존 보유 주식의 재측정 여부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제시했으며, 해석위원회는 이에 동의했다.

- 경제적 사건의 유의적인 변화(예, 지배력의 획득/상실)
- 기존 보유 지분의 측정 모형(예, 기존에 IFRS 9의 공정가치 측정모형인 경우 재측정)

또한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이 IFRS 3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논의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구분(*)	사업의 정의 충족	사업의 정의 미충족
(거래 1) 공동영업 → 지배력 획득	(2) 연차개선 제안	(4) 해석위원회 잠정 결정
(거래 2) 지배력 상실 → 공동영업	(1) IASB와 논의 일정 협의	
(거래 3) 공동영업 참여자 → 당사자	(3) 연차개선 제안	(4) 해석위원회 잠정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술된 해당 소괄호 항목에 자세히 기술함

### (1) [Current Agenda] 지배력을 상실하여 공동영업의 참여자나 당사자가 되는 거래

해석위원회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 위원들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IASB에서 논의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으로 자산의 판매나 출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분법 회계처리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논의를 연기할 지를 IASB와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래 2)

### (2) [Annual improvements] 공동영업의 참여자나 당사자가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사업)

해석위원회는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며, IFRS 3의 공정가치 측정 규정과 일관성이 있으므로 재측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단계적 취득시 이전 보유지분의 재측정을 요구하는 IFRS 3의 문단 41~42의 문구는 공동영업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는 규정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차개선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1)

### (3) [Annual improvements] 공동영업의 참여자가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사업)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의 참여자가 공동지배력을 획득하여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 아니며, 재측정하지 않는 것이 IFRS 11 '공동약정'의 규정(\*)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 IFRS 11.21 공동영업의 당사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IFRS 11의 문구가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연차개선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3)

### (4) [Tentative decisions] 사업이 아닌 거래

IFRS 3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다음의 거래에 대해 해석위원회는 실무적 다양성이 크지 않으며, IFRS 3의 문단 2(2)에서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이나 자산의 집합에 대한 취득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안건으로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공동영업의 참여자나 당사자가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
- 공동영업의 참여자가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

## 2. [Current Agenda] [IAS 16] 유형자산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유형자산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의 순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여기서 시험 과정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다.

과거 회의에서는 '시험 과정'의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IAS 16의 문단 17(5)에서는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로 볼 수 있다면 원가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출 산업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논의했다. 해석위원회는 추출 산업의 일부 기업이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순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매각금액은 시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의 건설에 필수적인 다른 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될 수 있다. 많은 해석위원회 위원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순매각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시험 활동으로 제한된다면, 시험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받은 순매각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이러한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많은 위원들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간의 원가를 배분하는 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 추출산업의 이슈

추출산업의 이슈는 유형자산을 만드는 활동이 곧 재고자산도 생산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유형 자산과 재고자산 간의 원가 배분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부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IFRIC 20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가 노천광산의 개발 단계에서 유사한 이슈에 대한 회계처리와 원가 배분 모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IFRIC 20의 범위는 한정하여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는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지침

일부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IAS 16의 문단 20에 언급한 대로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 향후 계획

해석위원회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staff에게 다음을 요청했다.

- IAS 16 문단 17(5)의 범위가 좁다는 것과 시험원가를 초과하는 매각금액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개발
- IAS 16 문단 20의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지침을 개발
- IAS 16 문단 21의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이 이슈와 관련 되는지 고려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기 전의 유형자산과 재고자산간의 원가 배분에 대한 지침 고려
-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한 순매각금액에 대한 양적 공시 요건을 개발

### 3. [Current Agenda] [IAS 16], [IAS 38], [IFRIC 12] - 자산 취득에 대한 변동 대가와 민간투자사업 약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해석위원회는 IFRIC 1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약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계약상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특히, 질의자는 아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사업의 시작 시점에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미이행계약 성격에 해당하는지(즉, 사업 약정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조건의 충족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해석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되는 상황은 사업결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변동 대가의 이슈와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시 변동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동 이슈에 대한 이전 논의에서, 해석위원회는 취득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변동하는 대가를 부채의 최초 측정 시점에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변동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리스와 개념체계 프로젝트에서 논의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리스의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제안의 재심의를 완료된 이후에 이 이슈를 다시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리스의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제안의 재심의를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이번 회의에서 해석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받았다.

- 이전 논의사항과 잠정적인 결정
- 최근에 개발된 IFRS의 업데이트
- Outreach 활동 결과
- 자산 취득 시 변동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리스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원칙을 적용한 결과의 설명

이번 회의에서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자산 취득 시 변동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리스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를 표명하였다. 일부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리스 회계는 특유의 회계 분야이고 리스 프로젝트에서 마련된 일부 결정의 근거가 직접적으로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석위원회는 Staff에게 리스계약의 변동대가의 회계원칙들을 뒷받침하는 개념의 논쟁과 자산취득 시 변동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에 이러한 원칙들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약정이 구별될 수 있고 특수한 유형의 거래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IFRIC 12의 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석위원회의 이전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료 약정이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약정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라면, 사업시행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적용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사용료 지급이 유형자산 이용의 권리와 연관되어 있을 때, 사업시행자가 자산 사용 권리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약정은 리스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 지급액이 유형자산 이용의 권리와 연관되어 있으나 약정 상 리스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지급액은 사용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사용료 약정이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약정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거나 리스의 정의를 만족하는 이용권이라면, 용역 사용 약정의 형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권자에게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결정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권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할 권리만을 갖는 민간투자사업(즉, IFRIC 12의 금융자산 모형의 적용)이라면, 사용료는 전체 수익 대가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권리만을 갖는 민간투자사업(즉, IFRIC 12의 무형 자산 모형의 적용)이라면, 지급액은 허가권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므로 인식된 무형자산의 원가 일부를 구성한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권리와 사업허가권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지급액이 전체 수익 대가나 허가권에 대한 대가의 조정을 의미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허가권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정가치와 비교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석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은 자산 취득 시 변동대가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전의 잠정적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4. [Tentative decision][IAS 32] 발행자의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 분류

해석위원회는 발행자의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의 분류와 선불카드의 사용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 선불카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만기가 존재하지 않음
- 현금으로 환불, 교환이 불가능
- 상품이나 용역으로만 교환가능
- 선택된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프로그램에 따라 업체의 범위가 결정됨. 선불카드보유자가 업체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면, 발행자는 업체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음
- 선불카드보유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선불카드 잔액은 감소하지 않음
- 고객충성제도의 일환으로 발행되지 않았음

해석위원회는 발행자가 선불카드보유자에게 현금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가 비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받았다.

해석위원회는 발행자가 선불카드보유자를 대신하여 업체에게 현금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현금을 인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자의 부채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발행자에 의한 상황이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경우라도, 선불카드보유자가 제3자인 업체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자의 의무는 여전히 금융부채라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카드를 발행한 발행자는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를 제거해야 하는 지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때 IFRS 9(IAS 39)를 적용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현재 존재하는 IAS 32의 관점에서 개정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해당 이슈를 공식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5. [Tentative decision][IAS 39] 부(-)의 이자율 상황에서 변동금리 채무상품 주계약에 내재된 금리플로어(이자율 하한)의 분리

해석위원회는 부(-)의 이자율 상황에서 IAS 39의 내재파생상품 규정의 적용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 IAS 39.AG33(b)가 부(-)의 이자율 환경에서 변동금리 채무상품 주계약에 내재된 금리플로어(이자율 하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문단에서 참조하고 있는 '시장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IAS 39.AG33(b)는 양(+)의 이자율 환경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의 이자율 환경에서도 금리 플로어에 적용되어야 한다.
- 계약이 실행되었을 때 IAS 39.AG33(b)의 적용 목적상 적절한 시장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신용이나 다른 스프레드를 포함한 계약의 특정한 조건과 적용되는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을 내리면서,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 IAS 39.AG33(b)는 양과 부의 이자율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문단의 요구사항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시장이자율의 정의는 IFRS 13에 정의된 공정가치의 개념과 관련이 있고 IAS 39.AG64에서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로 기술되어 있다.

해석위원회는 현재 존재하는 기준서의 관점에서 개정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해당 이슈를 공식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실무적용이슈 No.47〉 펀드운용사의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 판단



2013년부터 시행된 K-IFRS 1110호는 펀드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K-IFRS 1110호 시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리인으로서의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 지침에 따르면, 대리인은 주로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본인을 대신한 것이므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K-IFRS 1110호 문단 B58 참조]

펀드운용사는 기본적으로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로부터 의사결정권한을 위임받게 되는데, 개념적으로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고용된 것이다. 하지만, K-IFRS 1110호에 따르면 양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만으로 펀드매니저가 대리인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에 대한 의사결정자와 피투자자(즉, 펀드) 및 피투자자에 관여하는 다른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K-IFRS 1110호 문단 B60 참조]

-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 보상 약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 피투자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노출

위의 네 가지 요소 중 KPMG는 특히 투자자들의 보유하는 펀드운용사 해임권과 펀드운용사가 펀드운용실적과 관련하여 이익변동에 노출된 정도를 key indicators로 보고 있으며, 해임권의 강도가 강하거나, 펀드실적에 노출된 펀드운용사의 이익변동의 정도가 작으면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호 실무적용해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K-IFRS 1110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결정된 펀드운용사가 해당 펀드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투자자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다루는 K-IFRS 1028호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에 대한 지침은 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서인 기준서 K-IFRS 10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지배력” 판단에 대한 지침과 그 근거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펀드매니저가 펀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인지를 고려하는 지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IFRIC 해석위원회에서 동 이슈를 고려하였으나, IASB가 지분법 회계에 대한 포괄적인 과제를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검토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2015년 1월 IFRS IC 논의결과).

## Case 공통사항

- 펀드 F는 상장주식, 채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이다.
- 펀드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A사가 담당하고 있다.
- A사는 펀드 F를 설립하였으며, 펀드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은 10여개의 다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 동 펀드는 지분보유자들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고 있으며,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와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에 따른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보수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A사의 펀드에 대한 지배력 검토 결과

A사는 자산운용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운용보수를 수령하고 있으나, 직접 투자지분과 운용보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펀드운용실적에 노출된 이익변동의 정도가 K-IFRS 1110호에 따라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결론 내릴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A사는 투자자들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투자이사결정을 수행한다.

## Case 1 : 펀드 지분의 20% 미만을 보유한 펀드운용사

A사는 펀드 지분의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IFRS 1028호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의 자격으로 위임받은 투자이사결정권한이 '유의적인 영향력'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인데, IFR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논의가 마무리되어, 대리인으로서 보유한 의사결정능력이 '유의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동 이슈와 관련하여, K-IFRS 1110호의 도입으로, 대리인으로서 보유한 힘에 대하여 고려하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므로 이러한 분석을 K-IFRS 1028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펀드운용사가 보유한 힘이 자신이 아닌 투자자를 위하여 행사되는 힘이므로 '지배력'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서도 대리인으로서 보유한 능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견해로서, K-IFRS 1028호는 개정되지 않아서, 대리인으로서 보유하는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연결기준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K-IFRS 1110호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으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더라도 힘을 가지는 이상 펀드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KPMG는 IFRS 해석위원회에 보낸 comment letter를 통하여 IFRS 10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 Case 2 : 펀드 지분의 20%를 보유한 펀드운용사

수익자들은 펀드 F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산운용사 A를 출석한 수익자 과반수 및 총좌수 4분의 1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수익자들은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나, 의결과정을 통하여 집합투자 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IFRS 1028호에서는 의결권의 20%를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펀드지분의 20%를 보유한 수익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동 사례에서 펀드운용사도 20%의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Case 3 : 펀드의 활동이 사전에 대부분 정해진 대로 운용되는 경우

상기 Case 1, 2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피투자자의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구체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면 펀드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의 결정에 자산운용사가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Contact u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 DPP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S.Manager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정은 S.Manager  
T. (02)2112-0495  
E. jkim17@kr.kpmg.com

한지명 S.Manager  
T. (02)2112-7928  
E. jimyunghan@kr.kpmg.com

박동원 Manager  
T. (02)2112-3264  
E. dongwonpark@kr.kpmg.com

양유정 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www.kpmg.com/kr](http://www.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